



산업보건 주요뉴스



폐수처리장·폐기물처리시설 작업 중 화재·폭발 사고 증가에 따른 경보발령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는 최근 들어 정화조(화장실) 처리, 폐수·폐기물 처리시설의 보수 등 작업 시 화재, 폭발 사고 등이 급증함에 따라, 해당 시설물 보유 업체에 '위험경보'를 발령하고(기간: '22.6.25.~7.30.), 폐기물처리, 용접·용단 등 화재위험작업 시 안전 수칙 준수를 강력히 당부했다. 고용노동부는 최근 7년간('15년~'22.6월) 정화조, 분뇨 처리시설 및 폐수·액상폐기물 처리시설에서 32건의 사망사고로 52명이 사망했다고 밝혔다. 사고유형은 질식(21건, 사망 32명)이 가장 높고 다음으로 화재·폭발(7건, 사망 16명) 순으로 나타났다. 시설별로 폐수·폐기물 처리시설에서 사망사고(18건, 사망 30명)가 가장 많이 발생(사망자의 57.7%)했다. 작업내용별로는 청소·처리(12건, 사망 19명), 유지·보수(7건, 사망 10명), 화기작업(5건, 사망 11명) 순으로 발생빈도가 높다.

정화조, 오폐수시설, 액상 폐기물 저장탱크에서 작업 시 안전조치 필수!

오폐수 처리시설, 정화조, 폐유 등 인화성 액체를 저장하는 탱크 상부는 메탄, 황화수소 등 인화성 가스가 상시 존재하는 곳이다. 따라서 화재·폭발 사고 예방을 위한 적절한 안전조치가 없는 용접·용단 등 불꽃이 발생할 수 있는 화재위험작업은 절대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

안전이 확보되지 않았다면 작업하지 말아야

이러한 화재·폭발 등 화학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첫째, 오폐수시설, 정화조, 축산분뇨 처리시설은 사람이 작업하는 사무실, 화장실 또는 거주하는 곳으로 가스가 유입되지 않도록 환기장치를 설치하고 항상 가동되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처리작업을 위하여 사람이 시설로 들어가거나 장치를 사용하는 경우에 가스 농도를 확인한 후 가스를 제거하고 작업을 수행해야 한다. 둘째, 오폐수시설, 정화조, 액상폐기물 저장 탱크 상부에서 화재위험작업이 있을 경우에는 설비 내용물을 비우고 환기장치를 가동하여 인화성 가스를 제거해야 하며, 작업 전 및 작업 중에도 인화성 가스 농도를 주기적으로 측정하여 안전한 상태인지를 확인해야 한다. 셋째, 이러한 작업을 할 경우 기본적으로 사업주는 안전조치가 확인된 후 화재위험작업을 수행하도록 해야 하고, 근로자는 안전조치가 되었음을 서면으로 확인한 이후에 작업을 수행해야 한다.

화재·폭발 사고는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가능성 높아

김규석 산재예방감독정책관은 “인화성 가스가 상존하는 오폐수처리시설, 정화조, 액상폐기물 저장탱크 상부에서 안전조치 없이 화재위험작업 수행 시에는 반드시 사고가 발생한다”라면서 “날씨가 더워지면 정화조, 오폐수처리시설 등에서 인화성 가스 발생이 더욱 높아지므로 작업 전 반드시 내용물 제거, 가스 농도를 측정해 안전한지 확인 후 작업해야 한다”라며 “특히, 정화조 등에서 화재위험작업 시 화재·폭발 사고가 발생하면 사망에 이르는 경우가 많아, 중대재해처벌법 상 중대산업재해에 해당하므로 사고 예방을 위한 철저한 안전관리와 예방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당부했다.



국제노동기구(ILO), ‘안전하고 건강한 근로환경’을 노동기본권으로 추가

6월 10일(금)(제네바 현지 기준) 제110차 국제노동총회(International Labour Conference)는 1998년 『노동 기본원칙과 권리 선언(ILO Declaration on Fundamental Principles and Rights at Work, 이하 ‘기본권선언’)』을 개정하여 기존 4개의 노동기본권에 더해 ‘안전하고 건강한 근로환경(Safe and healthy working environment)’을 추가로 포함했다. 또한, 산업안전보건 분야 협약 중 제155호(산업안전보건과 작업환경) 및 제187호(산업안전보건 증진체계) 협약을 기본협약(Fundamental Convention)으로 선정함으로써 기본 협약의 갯수도 기존 8개에서 총 10개로 늘어났다. 이번 논의는 2019년 6월 국제노동기구(ILO) 제108차 총회에서 채택한 『2019년 일의 미래를 위한 ILO 백주년 선언』 및 결의문 후속 조치에 따라 국제노동기구(ILO) 이사회, 총회 등 3년간의 노사정 논의를 거쳐 이번 총회에서 마무리된 것이다.

제155호와 제187호 협약은 노사정 협의를 바탕으로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를 마련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해당 협약들이 기본 협약으로 선정됨에 따라 ILO의 이행 보고 의무가 강화되는 등 이전보다 엄격한 점검을 받게 된다. 새 정부도 “산업재해 예방 강화”를 고용노동 분야 국정과제의 가장 중요한 과제로 정하고 있는 만큼, 이를 기반으로 노사정이 함께 일하는 모든 사람이 보호받을 수 있는 노동환경 조성에 노력할 예정이다.

한편, 이번 논의에서는 개정된 “기본권 선언”과 여타 국제협정과와의 관계에 대한 유보조항이 같이 채택되었는데, 이는 개정 “기본권 선언”이 회원국이 기존에 체결한 국가 간 무역 및 투자 협정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권리와 의무에 의도하지 않은 효력을 발생시키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어 자유무역협정(FTA) 등 개별 협약에 대해서는 즉각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고용노동부 장관, 사망사고 고위험 기업 CEO 대상으로 안전 경영을 당부하는 서한 전달

고용노동부 이정식 장관은 기업 CEO 6천여 명을 대상으로, 사망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 경영의 실천과 “중대재해처벌법”상 경영책임자 의무 이행을 당부하는 서한문을 전달했다. 고용노동부는 상시 근로자 수가 50인 이상인 기업(건설업의 경우 공사 금액 50억 이상 현장)을 과거 사망사고 이력, 위험 장비 또는 공정 보유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사고 위험도에 따라 분류·관리하고 있는데, 그 중 특별히 위험도가 높다고 판단되는 “고위험 기업”(전체 기업 평균 위험도의 2배 이상) 6천 개사를 대상으로 특별히 안전을 당부한 것이다.

올해 1월 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었음에도, 법 시행일로부터 6월 10일까지 50인 이상 기업에서만 88명(79건)의 노동자가 사고로 목숨을 잃었다. 특히, 전반적인 산재 사망사고의 감소세에도 불구하고, 제조업에서 사고 사망자 수가 전년 대비 증가하는 등 사고 예방을 위해 한치의 긴장도 놓을 수 없는 상황이다. 대부분의 사망사고는 추락·끼임 등을 방지하기 위한 기본적인 안전조치 미비, 작업 위험 요인 점검 및 관리·감독의 부재 등으로 발생하는 만큼, CEO가 관심을 두고 현장의 안전관리 상태를 보고받아 필요한 조치를 하는 것만으로도 많은 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

이정식 장관은 서한문을 통해, “6월은 중대법에 따른 기업 자율 사고 예방체계를 정착시킴으로써, 사망사고를 획기적으로 줄여나갈 수 있는 골든 타임”임을 강조했다. 특히, “중대법에 따라 6월 30일까지 CEO가 현장의 안전상태를 보고받고, 필요한 조치를 이행해야 함을 꼭 기억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CEO가 중대법상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서는 기업 DNA를 바꾼다는 경영철학에 기초하여 경영체계에 안전의식을 내재화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한다”며, “안전을 CEO의 최우선 업무로 챙겨 줄 것”을 요청하면서, “내재화된 안전의식을 바탕으로 기업의 자율적 사고 예방체계를 구축하고, 현장에서 작동토록 철저히 관리해 달라”고 주문했다. 안전에 대한 투자 확대와 인식 전환에 대한 당부도 빠지지 않았다. “안전 투자는 기업에 이익”임을 강조하며, “중대법을 규제가 아닌 ESG 경영의 척도로 새롭게 바라보는 사고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점을 언급하며, “제 당부사항을 실천으로 옮겨 주신다면 사고 발생 가능성은 줄어들 것이며, 설령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사고 예방을 위한 노력은 인정받을 수 있음을 기억해 달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고용노동부도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컨설팅, 원하청 협력 프로그램 확대 등을 통해 기업의 노력을 뒷받침하겠다”며, “활력 있는 기업들이 우리 경제의 중심이 될 수 있도록, 기업의 어려움을 듣고 할 수 있는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했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서한문과 함께, CEO가 중대법상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해야 할 일과 주요 사망사고 사례, 추락·끼임 등 사고 방지를 위해 CEO가 보고받아야 할 내용 등에 대해 안내했다. 김규석 고용노동부 산재예방감독정책관은 “중대법에 따라 CEO를 중심으로 안전보건관리체계를 작동시키는 기업이 점차 늘어나는 반면, 아직 CEO의 의무 이행에 대해 어려움을 호소하는 기업이 있다”면서, “CEO가 법령상 주어진 의무를 제대로 알고 이행할 수 있도록, 대면·비대면 등 다양한 방식을 통해 지속해서 현장과 소통해 나가겠다”고 밝혔다.